

“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자치행정과-3217
등록일자	2016.2.5.
결재일자	2016.2.5.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정은정	김윤자	옥종식	이창훈	전결 02/05 주윤중	
협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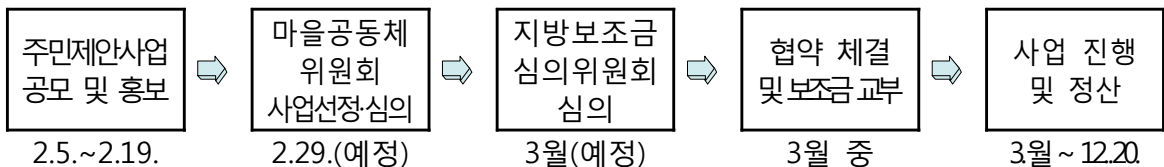
- 선진 강남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

2016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추진 계획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3월~11월(1차 공모기간: 16. 2. 5. ~ 2. 19.)
※적정사업 미 신청 및 선정 미달 시 하반기 2차 공모 예정
- 공모대상
 - 주민 참여를 통해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다수편익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필요성, 지속성, 공익성을 갖춘 사업
- 신청자격 : 주민(직장인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 모임 및 단체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 지원규모 : 개별사업 당 2,000천원 이내로 사업 지원(필요 시 예산범위 내 증액지원)
- 총사업비 : 20,000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선정방법 : 「마을공동체 위원회」 심의·선정
- 추진일정



2016. 2. .

강 남 구
(자 치 행 정 과)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b style="color: green;">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마을공동체 사업)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 대상 사업)
<b style="color: green;">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2016년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선진 강남 마을공동체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b style="color: green;">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b style="color: green;">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강남구 관내 3인 이상의 주민(직장인 포함) 모임
<b style="color: green;">분야 별 검토사항 [계속 : 0] [신규 :]	이 업무(사업)와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① 관련부서 협조 ----- (O)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O) ③ 추진 상 사전 걸림돌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⑤ 시장조사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O)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b style="color: green;">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25개 추진 중
<b style="color: green;">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해당없음

2016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추진 계획

지역 현안과 주민 욕구를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계획·주도하는 「2016년 강남구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 간의 소통과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고,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I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마을공동체 사업)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 대상 사업)

■ 추진방향

-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방식을 통한 사업 신청 및 접수
- 마을 단위 소규모 주민모임 활성화를 위한 사업 우선 선정
-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주민 참여 및 주민 주도 유도
- 「강남구 마을공동체 위원회」 심의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사업 선정
- 「강남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보조금 지원액 조정으로 보조사업 관리 강화
- 보조금 전용 통장 및 체크카드 사용으로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마을공동체 사업자 대상 교육 및 컨설팅으로 마을공동체사업 내실 강화
- 일반 주민 대상 교육을 통해 마을공동체 의식 확산 및 주민 역량 강화
- 공모사업에 대한 중간·사후 관리를 통한 주민제안사업 내실 강화

II 추진 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3월 ~ 11월(1차 공고기간 : 2016. 2. 5.(금) ~ 2. 19.(금)
※적정사업 미 신청 및 선정 미달 시 하반기 2차 공모 예정

■ 대상사업 : [자유제안]

- ① 주민 참여를 통해 주민 간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② 다수편익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필요성, 지속성, 공익성 등을 갖춘 사업

<<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예시 >>

분 야	사 업 내 용 - 공동체 형성과 운영을 위한 소규모 사업비 지원
함께 돌보는 “복지공동체”	이웃 간의 공동육아모임, 부모커뮤니티, 취약계층 지원사업, 청소년 휴카페, 다문화 마을공동체 형성, 자원봉사 활동, 방과 후 교실, 마을사랑방 운영 등
함께 만들고 소비하는 “경제공동체”	농·어촌 자매결연 및 직거래장터, 벼룩시장(녹색장터, 아나바다), 마을텃밭 가꾸기, 상가 마을활성화 사업 등
신나고 재미있는 “문화공동체”	마을축제(체육대회, 음악회), 마을도서관 운영, 마을미디어(소식지, 신문, 라디오), 마을사랑방, 예술창작소 운영, 마을학교 운영(인문학, 취미), 재능기부 활동 등
함께 가꾸는 “환경공동체”	깨끗한 마을가꾸기, 벽화거리·꽃길 조성, 안전마을 조성, 특화거리 조성, 친환경사업(재활용, 에너지 줄이기), 취약지역 순찰 등
함께 사는 “주거공동체”	공동주택(아파트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복지, 경제, 문화, 환경 등) - 아파트 축제(체육대회, 음악회), 나눔장터, 친환경사업, 단지텃밭조성, 인사하기 운동, 공동육아 모임, 마을학교(문화강좌), 자원봉사, 커뮤니티 보드판, 마을극장 등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	마을자원조사, 마을지도제작, 마을계획수립,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구성, 마을일꾼 양성 교육 등

■ 신청자격 : 관내 주민(직장인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 모임 및 단체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간주
- ※대표제안자 3인 중 1인 이상이 동일한 경우 동일 모임으로 간주

■ 사업예산 : 20,000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 모임별 1개 사업 공모 신청 원칙 (중복지원 불가)
- 개별사업 당 2,000천원 이내로 사업 지원 (필요 시 예산 범위 내 증액지원)

■ 공모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16. 2. 5.(금) ~ 2016. 2. 19.(금) 18:00까지
- 제출서류 : ①사업 제안서(예산집행계획 포함) ②모임 소개서
③단체 등록증 사본(제안자가 단체일 경우만 해당)
④개인정보처리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 ※신청서식 : 강남구 홈페이지(고시/공고) 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luckyej@gangnam.go.kr), 방문접수(자치행정과 주민지원팀)
- 선정방법 : 「강남구 마을공동체 위원회」 심의·선정

■ 지원내용

- 마을공동체 사업자 대상 교육 및 컨설팅
-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초기 사업비용 지원
 - 사업진행비(홍보비, 회의비,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소모성 물품구매), 인건비(수당, 강사료) 등 지원
- 사업성격,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보조금 지원액 조정
 - 프로그램 참여 단체복 등 개인별 준비물품은 원칙적으로 전액 자비부담
 -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단체운영비, 자산취득비(시설비)는 지원 제외
- ※[강남구 마을공동체 사업 보조금 집행기준] 추후 통보 예정

■ 지원제외

- 종교 · 정치적 목적의 사업 또는 단체
- 특정 회원만의 이익이나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단순 친목회 또는 영리목적의 사적인 모임
- 동일 사업내용으로 국·시·구 보조금을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 (중복지원 불가)
 - ※타 보조금 지원 확정 시, 자치행정과에 즉시 보고 의무
 - ※사후 부적절한 선정 및 보조금 중복지원 확인 시, 사업 중단 및 보조금 환수 또는 사업 변경 승인 후 사업 추진 가능 (관련 서식 자치행정과 문의)
-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취지에서 벗어난 광범위한 공익(인권문제 등) 추구 사업

Ⅲ 세부 추진계획

진행 순서 및 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공	16. 2. 5. ~ 2. 19.	구홈페이지·주민센터(동) 게시판 공고 및 강남마을넷 홍보
↓	↓	↓
사전 컨설팅 및 상담	16. 2. 5. ~ 2. 19.	주관부서 및 강남마을넷
↓	↓	↓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접	16. 2. 5. ~ 2. 19. 18:00	주관부서 서류접수 (사업제안서 및 구비서류)
↓	↓	↓
관련부서 및 주관부서 사 업 검 토	16. 2. 24. 限	동주민센터 및 관련부서 검토의견 제출 주관부서 종합검토 및 심사
↓	↓	↓
마 을 공 동 체 위 원 회 사업선정· 보조액 심의	16. 2. 29. (월) 10:00	마을공동체위원회 개최
↓	↓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 의	16. 3월 초(예정)	선정사업 보조액 최종 심의
↓	↓	↓
결과발표 및 협약체결	16. 3월 (예정)	구⇄마을사업자 간 협약체결 (실행계획서 및 구비서류)
↓	↓	↓
보 조 금 교 부	16. 3월 (예정)	보조금 전용 계좌 이체
↓	↓	↓
사 업 행 정 추 진 사 및 행 정 지 원	16. 3. ~ 16. 11.	마을사업자 : 사업 추진 주 관 부 서 · 강 남 마 을 넷 : 컨설팅·교육 및 행정 지원
↓	↓	↓
사 업 성 과 보 고 사 및 보 조 금 정 산	16. 12. 20. 限	결과보고서 제출(사업종료 15일 내) 보조금 정산(사업종료 1월 내) 사업성과보고회(예정)

■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공모 및 접수

- 공모 및 접수 기간 : 16. 2. 5.(금) ~ 2. 19. (금) 18:00
 - ※적정사업 미 신청 및 선정 미달 시 하반기 2차 공모 예정
- 공고 및 홍보 방법 : 강남구청 홈페이지, 주민센터(동) 게시판 공고 및 강남마을넷 홍보
- 공고내용 : 주민제안사업 개요, 제안서 및 구비서류 서식, 유의사항 등
- 신청자격 : 관내 주민(직장인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 모임 및 단체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간주
 - ※대표제안자 3인 중 1인 이상이 동일한 경우 동일 모임으로 간주 (1 모임 중복 신청 불가)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luckyej@gangnam.go.kr), 방문접수(자치행정과 주민지원팀)
- 제출서류 : ①사업 제안서(예산집행계획 포함) ②모임 소개서 ③단체 등록증 사본(제안자가 단체일 경우만 해당) ④개인정보처리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 유의사항
 -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최저규정은 별도로 설정하지 않으나, 자부담 비율을 선정·심의에 반영(예산의 현실성 및 주민의 자발적 참여 평가 기준)
 - 협약 체결 전까지 자부담금 전용통장 입금 증빙 의무

■ 사전 컨설팅 및 상담

- 기 간 : 16. 2. 5. ~ 2. 19.
- 대 상 :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
- 신 청 : 자치행정과 주민지원팀·강남마을넷에 이메일 또는 유선 신청
- 컨설팅 및 상담 지원 : 강남마을넷, 마을공동체 분야 활동가
- 내 용
 - 주민제안사업 제안서 및 실행계획서 작성 안내 (초안 구비 필수)
 - 주민제안사업 적합성 및 예산 적정성
 - 모임 활성화 방안 안내 및 지원
 - 주민제안사업 신청 및 집행 유의사항

- 강남구 마을공동체 사업 보조금집행 기준 등

■ **관련부서 및 주관부서 사업 검토**

- 기 간 : 16 . 2. 19. ~ 2. 24.
- 검토대상 : 동(부서) 관련 제출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 회신내용 : 중복지원여부, 사업실행가능성, 사업타당성, 사업효과성 등

■ **마을공동체 위원회 주민제안사업 선정 및 보조액 심의**

- 일 시 : 16. 2. 29.(월) 10:00
- 장 소 : 구청 본관 4층회의실
- 참석대상 : 마을공동체 위원회 위원, 주민제안사업별 대표자
- 심의방법
 - 사업별 대표자의 사업 소개 및 사업 운영 계획 발표
 -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의 질의 및 사업대표자 응답
 - ※추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보조금 교부 결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15.1.1.시행)으로 지방보조금에 대한 기본사항이 법제화됨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의무
- 심의내용
 - 2016년 강남구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지원규모 결정
 - 개별사업 당 2,000천원 이내로 사업 지원 (필요 시 예산 범위 내 증액지원)
 - 지원사업의 심의 및 선정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사항
- 심의·선정 기준

항 목		내 용
사업 타당성	① 사업의 필요성	- 공공의 과제 해결이나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사업 여부 -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 여부
	② 사업의 공익성	- 해당 지역 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 해당 지역의 마을공동체 사업 및 모임들과의 연대 가능성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③ 실 현 가 능 성	- 목표 및 성과측정 방법의 구체성 정도 - 마을사업 수행 경험 및 사전 상담 등 수행 여부 - 구체적 수행 가능성, 지역 특성 반영 여부, 수행 후 파급효과
	④ 지 속 가 능 성	- 지속적인 참여자 모집 및 관리 계획 - 사업의 연속성 여부

⑤ 자발적 주민참여	-사업 목적 및 제안배경의 구체성 -의사결정 기구 구성방안 및 참여자 역할 배분 등
⑥ 예산 현실성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자부담사업비 비율 -재정 자립 가능성(자부담 사업비 마련 방안 등)
⑦ 민관파트너십	-지역자원 협력방안의 현실성 및 적절성 -행정기관 역할분담 가능 여부 및 지역 연계 도모 능력 여부

※심의 결과 점수가 동일할 경우 자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 우선 선정

※기존 지원사업은 전년도 사업평가 및 보완·발전된 사업 계획 반영 여부 심사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0:00 ~ 10:01(1')	○ 개 회	주민지원팀장
10:01 ~ 10:05(4')	○ 인사말씀	부구청장(공동위원장)
10:05 ~ 10:10(5')	○ 위원소개	주민지원팀장
10:10 ~ 10:20(10')	○ 공동위원장 호선	위원
10:20 ~ 12:00(100')	○ 사업제안자 사업 소개(각 3분) ○ 주민제안사업 심의 ○ 선정사업 보조금 심의	호선 공동위원장

■ 결과발표 및 협약체결

- 결과발표 : 구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협약체결 : 구와 마을사업자 간
- 구비서류 : 실행계획서(마을공동체위원회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 보조금 교부신청서, 청렴서약서, 이행확약서

- ✓ 사업내용(예산, 대표제안자 등)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구의 사전 변경 승인을 받을 것(소정양식)
- ✓ 거래내용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전용 계좌 및 자부담금 전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사용 원칙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업을 중단하고 보조금 즉시 반환
 - ① 당초 계획서 상의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을 불이행한 때
 - ②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 ③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 착수하지 아니한 때
 -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때
 - ⑤ 타 기관 또는 타 부서에서 보조금을 중복지원 받을 때
 - ⑥ 기타 구청장이 사업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

○ 유의사항

- 협약 체결까지 자부담금 확보 및 전용계좌 입금 증빙

■ 보조금 교부 : 16년 3월 중

- 최종 실행계획서 제출 및 협약체결 이후
- 보조금 2,000천원 이상, 사업기간 2개월 이상 사업에 대해 보조금 분할교부

■ 마을공동체 교육 및 컨설팅

○ 필수교육

- 대 상 : 선정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대표자 및 회계담당자
- 일 시 : 16년 4월 중(예정)
- 장 소 : 구청 제2별관 아카데미교육장
- 내 용 : 마을공동체 사업 보조금 집행 기준,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법
마을공동체 및 마을공동체 사업의 이해
사업변경 신청 절차 등 주민제안사업 수행 시 필요한 제반 사항

○ 일반 주민 및 담당공무원 대상 교육

-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교육
 - 방법 : 각 동 직능단체 회의 및 5인 이상 주민 요청 시 방문교육
 - 장소 : 동 주민센터 회의실, 강남마을넷 회의실 등 주민 요청 장소 섭외
 - 내용 : 마을공동체 및 마을공동체 사업 기본교육, 시·구 주민제안사업 안내

○ 컨설팅

- 기 간 : 연중 상시
- 대 상 : 2016년 강남구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선정 사업자 및 일반주민
- 내 용
 - 주민제안사업자 대상 : 보조금 집행 기준,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법, 사업변경 신청 절차 및 관련 서류 작성법 등 주민제안사업 수행 시 필요한 제반 사항
 - 일반 주민 대상 : 마을공동체 및 마을공동체 사업의 이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

- 컨설턴트 : 마을공동체 활동가, 마을공동체 화계지원단(시 마을공동체 담당관 운영 예정)

○ 마을공동체 우수사례 탐방 및 마을아카데미

- 추진방향 : 우수사례 탐방 및 체계적인 마을활동가 교육을 통해 주민 및 담당공무원의 역량을 기르고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 도모

- 세부 일정 및 계획 추후 별도 공지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체크카드(보조금 전용, 자부담금 전용) 사용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 원칙
 ※[강남구 마을공동체 사업 보조금 집행기준] 추후 통보 예정
- 사업 결과보고서 등 제출
 -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구 담당자에게 제출
 - 마을사업자는 구청 요청 시 관련 서류 수정·보완 제출 의무
 - 구비서류 : 사업결과보고서(소정양식),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출력), 지출증빙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강의확인서 등 원본), 통장사본(보조금 전용·자부담금 전용 계좌, 최초 보조금 입금 시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이체 내역 전체 포함)
 - 기타자료 : 각종 유인물, 자료집, 사진, 동영상, 언론보도 자료 등

■ 사업성과보고회

- 추진개요
 - 일 시 : 16년 12월 중(예정)
 - 참석대상 : 부서장, 관련부서 담당자, 주민제안사업 대표자 및 참여자 등
 - 내 용 :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현황 및 사업 성과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모색
 마을공동체 사업자 간 네트워크 강화

IV 행정사항

■ 전체 부서(동)

-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주민 홍보 및 안내
- 중복지원 여부 검토 및 회신
- 부서별 추진 중인 주민참여사업과 연계한 사업 추진

■ 주관부서(자치행정과)

- 추진일정에 맞춰 관련부서(동)간 유기적 업무협약에 따른 사업 진행

- 선정 여부와 무관하게 주민제안사업 신청 주민모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지속 추진
⇒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각 부서별 주민참여사업 참여 유도

- 붙 임 : 1.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공고문(안)
2.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제안서(사업계획, 예산계획, 모임 소개 포함)
3.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부서 검토의견서. 끝.